

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승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ceptance of Payment Order and UCC 4A in the United States

이병렬(Byeong-Ryul Lee)

창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목 차

I. 서 론	V. 결 론
II. UCC 제4A편에서의 지급지시의 본질	참고문헌
III. 지급지시의 승낙	Abstract
IV.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Abstract

This paper wants to suggest some issues on the acceptance of payment order in Electronic Funds Transfer of USA.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riginator's bank accepts a payment order when it executes the order. Secondly, beneficiary's bank accepts a payment order at the earliest of the following times: (1) when the bank pays the beneficiary as stated in Section 4A-405(a) or 4A-405(b), (2) when the bank notifies the beneficiary of receipt of the order or that the account of the beneficiary has been credited with respect to the order unless the notice indicates that the bank is rejecting the order or that funds with respect to the order may not be withdrawn or used until receipt of payment from of the order. (3) when the bank receives payment of the entire amount of the sender's order pursuant to Section 4A-403(a)(1) or 4A-403(a)(2). Lastly, the acceptance of a payment order cannot occur before the order is received by the receiving bank.

Key words : UCC 4A, Payment order, Electronic Funds Transfer, Fedwire

I. 서론

미국은 1951년 통일주법전국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in Uniform State Laws ; NCCUSL)와 미국법협회(American Law Institute ; ALI)가 공포한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을 제정하여 초기 부분적으로 각 주들이 채택하여 상업적 거래를 규율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주들이 상업적 거래를 공정하고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인식하여 채택하고 있다. 특히 U.C.C. Article4편에 ‘자금이체’편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제정된 U.C.C. Article 4A¹⁾는 당사자간에 자금이체를 통한 의무와 책임을 할당하기 위하여 지급지시 및 화폐를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새로운 기술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는데 역점을 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는 연방법으로서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s Transfers of 1978)은 이미 제정되어 상거래에 적용되고 있었지만 이러한 법들은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자연인인 소비자들의 소액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기업간 거액전자자금이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있는 어떤 포괄적인 법도 없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이들 문제의 일부를 규율하고 있었지만 이들 약정은 통일성이 부족하여 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일관성 있게 규율할 수 없었다. 자금이체에 따른 약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분쟁에 직면한 법정은 수표로 결제되는 지급방식을 규율하고 있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3편과 제4편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보통법원칙에 의존하여 왔다. 따라서 소비자들 외의 상업적인 성격의 기업간 전자자금이체는 이러한 범규범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국제무역 및 해외투자의 증대와 자본자유화로 금융업무의 복잡화 및 다양화 은행들의 결제업무가 폭증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자금을 통한 결제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간 전자자금을 규율하는 체계적인 법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업 및 금융기관 상호간의 지급 망에 의한 소위 기업간 전자자금이체에 한정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입법을 하게 되었다.²⁾

상기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U.C.C. Article 4A편(이하 제4A편)이 적용되는 자금이체의 메카니즘은 자금이체의 수익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로 시작되는 일련의 거래로서 정의된다.

1) 제4A편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전체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장은 동 법률의 적용범위, 지급지시 및 자금이체 등 기타에 대한 정의, 연방준비규정 그리고 운영회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소비자거래는 배제된다. 제2장은 지급지시의 전송과 승낙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보안절차 및 무권한 지급지시와 관련하여 원지시인에게 보고할 의무와 지급의 반환, 지급지시의 거절, 지급지시의 정정과 취소 및 승낙되지 않은 지급지시와 관련하여 수신은행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전송자에 대한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의 이행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지급지시의 이행과 이행일, 지급지시의 이행에 따른 수신은행의 의무, 지급지시의 이행착오와 그에 따른 보고의무 그리고 지급지시의 이행지연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급일, 지급은행의 이체지급의무 그리고 수익자에 대한 원지시인의 지급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기타 규정으로서 자금이체시스템의 효력, 이자율 및 법의 선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병렬, “기업간 전자자금이체에서의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2, p.31.

2) Fred H. Miller and William B. Davenport,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the Uniform Commercial Code,” *The Business Lawyer*, Vol. 45, 1990, p.1389.

특히 제4A-103조에서 지급지시는 수익자에게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수신은행에게 전자적으로 전송된 전송자의 지시로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4A편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전자자금 이체에서의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발생시키는 모든 법률적 효과는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의 전송으로부터 시작되어 수익자거래은행을 포함하는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이 과정에서 지급지시의 승낙은 자금이체의 완료를 결정하는 매우 주요한 관건이며 자금이체의 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급지시의 효력발생과 소멸을 주로 고찰한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 지급지시의 효력”(강원진, 이병렬 2001.6)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급지시의 승낙을 그 주체별로 구분하여 제4A편에서 규정의 적용과 함께 판례를 통한 사례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문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 특히 규정의 적용을 제4A편과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지급이체에 관한 표준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제4A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지시로 한정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제4A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급지시의 당사자인 원지시인의 거래은행과 수익자거래은행의 지급지시승낙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UCC 제4A편에서의 지급지시의 본질

1. UCC 제4A편의 적용

제4A편은 현존하는 전자결제법 중에서 최고의 제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³⁾ 왜냐하면 *Sheerbonnet, Ltd. v. American Express Bank Ltd* 사건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전자결제시대에 기존의 결제방식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너무 상이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표준과 법률적 체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즉, 이미 존재하여 상거래에 작용하고 있던 연방법 및 각 주 제정법으로서는 기업간 전자자금이체에서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을 통일적이며 체계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웠기 때문이다.⁶⁾

3) Joseph H Sommer, “A Law of Financial Account: Modern Payment and securities Transfer Law”, *The Business Lawyer*, Aug 1998, pp.14-15.

4) 905 F. Supp. 127, 28 UCC Rep. Serv. 2v (CBC) 330 (S.D.N.Y. 1995).

5) Thomas C. Baxter, James H. Freis, “Electronic Commerce and Transactions Article 4A and Electronic Payments”, *American Law Institute-American Bar Association Continuing Legal Education ALI-ABA Course of Study*, December 1998, p.133

6) Geva Benjamin, *The Law of Electronic Funds Transfers*, Matthew Bender & Co., Inc, 2003.pp.2-6-7.

그러나 제4A편은 미국법협회와 통일주법 전국위원회가 이미 승인하였고 그 이후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이 법을 채택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미국 전체 통일성을 달성하였다.⁷⁾ 특히 NCCUSL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여타 국가와 협력하여 여러 관련법들을 제정한 바 있고 계속적인 노력도 하고 있어 미국의 제4A편은 국내외적으로 통일성을 더욱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4A편의 가장 큰 의의는 아직 전자결제에 관한 명확한 법률체계를 갖추지 못한 세계 여타 국가를 위하여 전자결제의 표준을 만들었다는 점이다.⁸⁾ 즉 미국은 제4A편의 입법을 계기로 아직까지 전자결제와 관련된 통일된 법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들에 비하여 법률적인 기반을 먼저 구축함으로써 전자자금이체 선도국으로서 국제상거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⁹⁾ 현재 미국의 모든 주가 제4A편을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제4A편의 원칙은 유엔국제 무역법 위원회가 국경을 초월한 자금이체를 규율할 목적으로 1992년에 제정한 통일 법인 '국제지금이체에 관한 표준법'의 기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¹⁰⁾

이와 같이 제4A편은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포괄적인 입법으로서, 상업적 전자자금이체 즉, 거액 지급이체(wholesale credit transfer)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소비자 전자자금이체와 추심이체(debit transfer)는 1978년에 제정된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에서 규율되고 있다.¹¹⁾ 그리고 전자자금이체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나머지 다수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기타 지급을 위한 결제법 체계에 적용되는 모든 법 원리를 유사하게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¹²⁾ 제4A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간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는 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 등이다.¹³⁾ 그러므로 ACH를 이용하는 자금이체의 대부분은 1978년의 전자자금이체법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는 소비자간의 이체이므로 제4A편에서는 규율하지 않는다.¹⁴⁾ 둘째,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행되는 전자

7) 제4A편이 입법과정에서 미국 전체의 통일성을 달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아리조나주, 코네티컷주, 캔자스주, 미시시피주, 네브라스카주, 뉴저지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 오클라호마주 등에서는 자신의 주에 적합한 형태로 일부 변형하여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통일상법전 제4A편은 각 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상이하다; <http://www.secure.law.cornell/uniform.html>, 10 Feb., 2005.

8)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약관, 은행협회의 규칙, 중개기관의 운영규칙 등에 의존하고 있다.

9) <http://www.law.cornell.edu/ucc/4A/4A-102.html>, 15 May., 2004.

10) 이병렬, 전제논문, pp.35-40.

11) 이병렬, 신국제결제시스템으로서 전자자금이체에서의 고객의 보호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3호, 2004.9, pp.235-236.

12) 유선기, 전자자금이체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7, pp.61-66.

13) 제4A편의 적용 대상은 고객인 원지시인, 원지시인의 거래은행, 중개은행, 수익자거래은행, 그리고 수익자이며, 전자자금이체시스템 및 연방준비은행과 같은 전자적인 결제기구운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4A-104.

14) 제4A편과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이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소비자신용보호법의 제9편으로 추가된 입법으로서 특수한 분야에 적용되는 정책법규인 반면 제4A편은 미국의 자금이체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볼 수 있다. 제4A편과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데는 소비자의 개념이 기준이 된다.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에서 소비자란 자연인을 말하고 사회나 조합은 제외된다. ACH 등 전자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소비자의 연방 소액지급과 관련하여서는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에서 규율한다. 따라서 자금이체의 어느 것이라도 일부가 소비자 연방 거래로서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에 의하여 규율된다면 그 자금이체에 관한 제4A편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는 제4편에서는 소비자의 자금이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제4A편 등 다른 법의 적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소비자관련 전자자금이체라 하더라도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에 해당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

자금이체를 규율하고 있다.¹⁵⁾ 셋째, 거래비용이 저렴하고 당사자간에 위험을 할당하고 있다. 넷째, 기업간 거액전자자금이체와 유사한 비 소비자의 자동정산원(Automated Clearing House; ACH)에 의한 자금이체는 이체금액이 거액이기 때문에 제4A편이 적용된다. 다섯째, 제4A편은 국내자금이체에 적용되기도 하고 합의에 의하여 국제자금이체를 하는 당사자를 규율하는 법으로도 선택될 수 있다. 그런데 미국통일상법전은 동 법이 제정된 미국의 재판관할권내에 존재하는 당사자들의 자금이체에만 적용된다. 여섯째 제4A편은 유러커런시(eurocurrency)로 이루어지는 자금이체에도 적용된다.

2. 지급지시의 본질

1) 지급지시의 의의

전자자금이체에서 지급지시(payment order)란 전송자가 수신은행에게 정액 또는 확정 가능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거나 또는 다른 은행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도록 발행하는 지시를 말한다.¹⁶⁾ 제4A편과 UNCITRAL의 국제지금이체에 관한 표준법(이하 표준법이라 함)에서는 전송자의 지급지시를 자금이체를 진행시키는 연결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지급지시는 전자자금이체에서 중심적인 개념이자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전송자의 지급지시의 전송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지급지시를 기본계약의 존재에 따른 위임계약인가 또는 독립적인 계약인가에 따라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¹⁸⁾

첫째, 지급지시가 전송되기 이전에 원지시인과 거래은행간에는 사전에 전자자금이체에 따른 기본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고 지급지시는 위임계약으로서 기본계약을 구체화시키는 위임인의 지시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라 지급지시는 주 계약인 전자자금이체계약에서 이미 약정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준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뿐이지 지급지시만으로는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본다. 둘째, 지급지시가 전송되기 이전에는 전자자금이체에 따른 기본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급지시를 법률적인 효력을 독립적으로 발생시키는 청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전자자금이체계약과 같은 기본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지급지시가 전송되기 이전에는 이 계약만으로는 당사자에게 추상적인 권리와 의무만 발생시키고 구체적인 법률적 효력은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의 이행과 더불어 발생된다고 보는 설이다. 제4A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지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4A편에서는 전자자금이체를 위한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청약으로 보고 수신은행은 원지시인의 청약에 대

체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는 제4A편의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유선기, 전계 논문, pp.67-68.

15) Kathleen Patchel, Robyn L Meadows and Carl S Bjerre, "The Uniform Commercial Code survey: Introduction", *The Business Lawyer*, August 1999, p.2.

16) 제4A-103; UNCITRAL Model Law 2(e).

17) Thomas C. Baxter, and James H. Freis, *op. cit.*, pp.132-133.

18) 정경영, "자금이체제도의 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4, p.2.

하여 승낙하여야만 당사자간의 법률적인 의무와 책임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급지시도 독립적인 법률적 효력을 가진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표준법에서도 제4A편과 유사하게 지급지시를 정의하고 있지만 지급지시의 효력발생과 관련해서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수신은행은 지급지시를 승낙하지 않더라도 수신자체만으로 지급지시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⁹⁾ 이에 따라 전송자의 지급지시의 전송을 하나의 독립적인 법률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기본계약이 존재하는 위임인의 지시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급지시의 특성

제4A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지시의 정의를 기초로 지급지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급지시는 부가적 조건이 필요 없다. 상거래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사용하면 신속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전자자금이체에서 전송자가 지급지시를 전송하면서 특정한 서류의 수령을 조건으로 한다면 지급지시의 이행이 상당히 지연될 뿐 아니라 지급지시의 전송과 서류의 도착사이에 시간적인 갭(gap)이 발생된다.²⁰⁾ 이에 따라 당사간의 혼란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증가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의 유용성이 소멸되어 종이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결제방식에 비하여 경쟁력우위의 효과가 상실된다. 이러한 사유로 제4A편에서는 전송자가 수신은행에게 지급지시를 전송할 경우 관련서류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²¹⁾ 그러므로 원지시인을 포함한 모든 전송자는 지급지시를 전송할 경우 지급지시의 이행시기 외에 다른 지급조건을 부가해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급지시의 이행시기 외 지급지시의 무조건성을 인정한 다음의 판례에서도 알 수 있다.

즉 *Trustmark Ins. Co. v. Bank One, Arizona* 사건²²⁾에서 고객은 그의 거래은행에게 무이자발생계정에서 총 잔고가 미화 11만 달러가 될 때마다 또 다른 은행으로 총 잔고가 미화 1만 달러 이하가 되도록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은행은 고객과의 자금이체약정이 만료가 되기까지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객도 어떠한 추가적인 새로운 지시를 하지 않았다. 무이자계정에 적립된 총 잔고는 미화 약 2천만 달러에 육박하게 되었고 이 자금을 이자가 발생하는 계정으로 이체하지 못함으로써 고객이 입게 된 이자손실은 미화 5십만 달러를 초과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전송자의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이자가 발생하는 계정으로 이체하라는 지급지시가 제4A편하에서 규율하는 자금이체로서 지급지시가 인정되느냐의 여부이다. 103(a)(1)(i)에서는 지급지시는 수익자에게 지급시기를 제외한 다른 지급조

19) UNCITRAL Model Law 5(6).

20) 전통적인 결제방식에 이용되는 종이선하증권의 유통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즉 선하증권의 도착과 실제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지정된 항구에 도착하는 시간적인 갭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결제 및 인도가 지연됨으로서 결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21) Thomas C. Baxter & Raj Bhala, "Improper Execution of Payment Order", *The Business Law*, Vol. 45, 1990, pp.1447-1449.

22) 202 Ariz. 535, 48 P.3d 485, 48 U.C.C. Rep. Serv. 2d 276 (Ct. App. Div. 1 2002)

건을 명시되지 않은 지시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은 제4A편의 해당규정을 들어 일정한 금액이 초과하면 이자가 발생하는 계정으로 이체하라는 지급지시는 이행시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제4A편의 적용을 받는 지급지시로 인정되어 거래은행은 해당지급지시를 승낙하거나 거절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에게 막대한 이자손실을 입혔던 점을 지적하여 패소판결을 내렸다.²³⁾

그러나 지급지시를 전송할 때 지급지시가 정확하게 이행되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과 이행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조건을 첨부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원지시인이 전송한 지급지시를 수신은행이 승낙하게 되면 수신은행은 그에 따른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수신은행이 정상적으로 지급지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송자는 지급지시와 관련된 특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Piedmont Resolution v. Johnston* 사건²⁴⁾에서 법정은 거래은행이 전송자의 지급지시에 관한 정보를 누락하여 전송자의 의도와 다른 내용의 지급지시를 이행하였다면 수신은행은 전송자와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전송자는 그의 지급지시를 수신은행이 이행함에 있어 그가 명시한 정보를 수신은행이 간과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준법에서는 지급지시의 무조건성과 관련하여 제4A편과 기본적으로는 그 의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제4A편과 달리 표준법에서는 조건부 지급지시를 전송한 전송자의 법적 지위에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신은행이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에서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지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지급지시를 전송한 수신은행은 원지시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이 지시에 따라 지정된 수익자는 지급지시의 수익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⁵⁾ 그러므로 표준법에서는 수신은행이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에 별도의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면책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급지시는 확정성을 가진다. 거래은행이 이행한 지시는 전송자로부터 지급지시의 금액을 수신을 받은 후 전송자의 계정에서 해당금액을 출금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래은행은 그의 계정에 지시 금액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지급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의 판례에서도 입증되었다. 즉 *Eurocredit Bank v. Citibank, N.A.*, 사건²⁶⁾에서, 법정은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에게 취소불가능 및 최종적인 방법으로 지급지시가 수신된 때만 원지시인의 지시를 이행하라는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무권한 이체를 이행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예탁된 자금을 이체하라는 전송자의 지급지시의 수신에 앞서서 해당계정에서 자금을 먼저 인출하였다.²⁷⁾ 근거계약으로서 자금이체에 관한 지급지시는 계정잔고에서 허락되는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

23) Benjamin Geva, "Recent UCC Article 4A Jurisprudential Analysis",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36, No. 2, fall 2003, pp.22-26.

24) WL 138825 (DDC. 1998).

25) UNCITRAL Model Law 3.

26) 1996 WL 556990 (S.D. N.Y. 1996)

27) 제4A-204.

다. 제4A편의 보호없이, 만약 은행들이 지급지시 없이 자금을 이체하였다면 이자손실과 거래비용을 초과하는 예상 가능한 결과적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²⁸⁾ 확정되거나 결정적인 금액이라는 점에서, 유통수단에서 지급가능한 금액은 이자 및 비용을 포함여부를 불문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셋째, 지급지시는 직접성을 가진다. 제4A편에서는 지급지시는 전송자가 수신당사자에게 직접 전송되거나 또는 대리인,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수신은행에게 전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 그리고 하나의 지급지시가 동일한 수익자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그 지급지시는 별개로 보고 원지시인은 각 지급지시에 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사건에서도 입증되었다.

Community Bank v. Stevens Financial Corp. 사건³⁰⁾에서 법정은 FedWire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지급지시는 올바른 지급지시의 이행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제4A편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지급지시는 지급지시를 수신 받는 당사자에게 지정된 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전송되어야 효력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3. 근거채무의 이행

원지시인(지급인)이 수익자(피지급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근거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관련당사자간에 합의한 조건에 따라 지급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금이체의 당사자들이 제4A편에 의한 근거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이체가 완료되어야 하며, 둘째 대금지급이 수익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³¹⁾

자금이체의 지시에서 완료에 이르기까지 근거거래³²⁾는 원지시인과 수익자간의 원 계약에 기초한다. 수익자에게 부담해야 할 금전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원지시인의 자금이체의 이용은 406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원지시인은 자금이체메카니즘상의 수익자 거래은행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지시의 시점에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³⁾ 만약 이 지급이 결제의무를 만족시킨다면 채무는 변제될 것이다. 406(a)에 따르면 지급은 수익자거래은행이 지시를 승낙하는 시점에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채무이행의무는 만족되어진다. 승낙이라는 용어는 209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완료'는 405(d)에 의하여 규율된다. 수익자거래은행이 수익자의 계정에 대금을 지급하고 수익자가 그 자금을 즉

28) *Evra Corp. v. Swiss Bank Corp.*, 673 f.2d 951, 1982 A.M.C. 2665, 33 Fed. R. Serv. 2d 1666, 34 U.C.C. Rep. Serv. 227 (7th Cir. 1982).

29) 제4A편에서는 전송자와 거래은행간에 전송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다양한 통신시스템(예를 들면 FedWire, CHIPS 및 SWIFT)을 통한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규율하고 있다; 제4A-206(a).

30) 966 F.Supp 775, 786(ND Ind. 1997).

31) 근거채무의 이행에는 제4A편의 2개의 조항이 필요하다. 첫째, 자금이체의 승낙을 규율하고 있는 209조가 적용되고, 둘째는 406조가 적용된다.

32) Dianna Kyles, "The Concept of Payment: Wire Transfer Order, The Common Law and article 4A", *Dalhousie Journal of Legal Studies*, Vol.11, 2002, pp.217-233.

33) 제4A-406.

시 이용가능하게 될 때 405(a)(iii)하에서 지급이 발생한다는 것을 법정에서도 인정해왔다. 이 결정은 근거채무의무가 이행되는 조건에 따라 명확해진다. 그러나 자금이체의 완료와 근거채무의무의 이행간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어떠한 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더욱 분명해진다. 만약 자금이체시스템이 총액결제방식(Real-Time Gross Settlement; RTGS)일 경우 지급지시의 금액이 수취될 때 지급이 이루어지는 조건부적인 시스템이라면 405(d)의 요구조건에 따라 수익자의 계정에 지급이체가 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³⁴⁾ 그러나 자금이체시스템이 차액결제방식(Deferred Net Settlement: DNS)에서 결제의무가 상호 네팅(netting)하는 시스템일 경우 결제의무를 당사자들이 상호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승낙은 무효화 되고 수익자는 수익자거래은행에게 예탁된 금액을 재 지급하여야 한다.

Ⅲ. 지급지시의 승낙

1. 지급지시의 승낙에 관한 재량권

거래은행³⁵⁾은 그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수신한 지시를 승낙하게 된다. 또한 거래은행이 자금을 이체 하라는 전송자의 지급지시를 승낙하게 되면 지시를 승낙한 은행을 중심으로 관련당사자들은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³⁶⁾ 그러나 제4A편하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거래은행은 지급지시를 승낙할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⁷⁾ 거래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지 않았다면 지급지시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거래은행이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전송자의 거래은행에 대한 지급지시의 승낙요청은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지 않았다면 제4A편 또는 약정에서 제시한 정도까지 약정위반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거래은행이 전송자의 지급지시를 거절하는 것은 전송자에 대한 거래은행의 권리이다. 거래은행은 전송자로부터 수신 받은 지급지시를 반드시 이행할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 지급지시의 이행을 거절할 수 가 있다. 거래은행은 지급지시를 승낙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거래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기 이전에는 전송자의 지급지시를 이행하여야 할 어떠한 책임도 없다. 즉, 이 행은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거래은행은 지급지시를 수신한 이후 승낙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34) 이병렬·이천우, “은행간 온라인 결제시스템에서 결제실패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20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3, p.157.

35) 제4A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은행이라 함은 원지시인의 거래은행과 수익자의 거래은행을 의미한다.

36) 수신은행은 지급지시를 승낙하게 되면 지급지시의 이행의무, 지급지시의 이행에 따른 위험주의의무, 이체지급의무, 이체지급에 따른 통지의무, 자금환급보증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37) Patricia Brumfield Fry, “Basic Concepts in article 4A : Scope and Definition,” *The Business Lawyer* Vol. 45, 1990, pp.1401-1413.

2. 원지시인거래은행의 지급지시의 승낙

원지시인거래은행은 전자자금이체과정에서 제2의 지급지시인이자 제1의 수신은행이 된다. 따라서 원지시인은 그의 거래은행에게 지급지시를 전송하여 해당은행이 관련 지급지시를 승낙하도록 정확한 지급지시를 전송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제4A편과 표준법에서는 타 은행간 이체에서 지급지시를 승낙한 거래은행은 이행일에 지급지시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단 거래은행은 지시를 승낙한 이상 적절한 시간에 정확하게 지시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³⁸⁾ 그러나 지급지시를 수신하기 전에는 지급지시를 이행할 책임은 없다.

제4A편에서는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지급지시를 거절 한 경우 이미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에 이체된 원지시인의 지시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의 규정을 두고 있다.³⁹⁾ 즉,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지급지시 이행일에 원지시인이 지급지시의 거절에 관한 통지를 수신하지 않거나 또는 원지시인의 계정에 이자를 부가시키지 않았다면 지시금액과 관련하여 이행일부터 지급지시가 취소된 날 또는 원지시인이 지급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수령한 날 그리고 지급지시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안 날 까지 중 어느 것이든 가장 빠른 날까지의 경과 일수 분의 이자를 원지시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그 기간 중 인출가능 잔고금액이 지시금액보다 부족한 경우는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의 이자의 지급금액은 해당지시금액에서 부족한 만큼 감액된다. 왜냐하면 잔고가 부족할 경우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된 자금을 보유하게 되고 원지시인은 지급지시가 승낙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 자금을 출금하지 않기 때문이다.⁴⁰⁾ 또한 원지시인이 그의 거래은행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계정에 인출가능 잔고를 가지고 있고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그 잔고를 초과하지 않는 지시를 거절하거나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때에도 원지시인거래은행은 원지시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⁴¹⁾ 또한 원지시인거래은행이 이러한 책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약정에 기초하여 부가적인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수익자거래은행의 지급지시의 승낙

제4A편은 수익자거래은행에게 원지시인의 거래은행과 동일하게 지급지시의 승낙 및 거절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수익자거래은행이 수익자의 계정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수익자거래은행에게 그의 고객에게 법률적으로 부채를 부담할 시

38) 제4A-302(a); UNCITRAL Model Law 8(2).

39) 제4A-210(b).

40) http://www.lawupenn.edu/library/ulc/UCC_2b/2b898.html, 14 Jan., 2006.

41) *Pan American World Airlines v. Midatlantic Natl. Bank* 사건)에서 법정은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원지시인에게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계정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지급은행에게 자금을 이체 할 것을 지시 받은 후에 여러 달 동안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고객은 이자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991 U.S. Dist. LEXIS 389 (D/N.J. 1991).

간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제4A편에서는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에 대하여 수익자거래은행의 승낙을 지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익자거래은행의 승낙은 자금이체의 완료, 근거채무의 이행, 수익자거래은행이 수익자에게 부채를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⁴²⁾ 수익자거래은행의 승낙의 효력은 수익자에게 대금지급, 지급통지, 수익자거래은행이 전송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함으로써 발생된다. 그러나 상기에서도 밝혔듯이 근거채무의 이행과 결제의 완료가 반드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용되는 자금이체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승낙은 우선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지급지시의 수익자의 계정에 지급이체 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수익자의 계정으로 지급의무는 다음의 세가지중 한 가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첫째 수익자가 지급이체를 인출할 권리를 통지받을 때, 둘째 자금이 수익자의 부채에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지급지시와 관련된 자금이 은행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하게 제공된 때이다. 이와 같은 지급을 이체하기 위한 수익자거래은행의 의무는 404(a)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러나 수익자거래은행의 지급의무는 지급지시를 승낙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조건부적이다. 만약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수익자의 계정에 지급이체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209(b)(i)에서 제시한 승낙의 정의에 따라 405(b)가 적용된다. 만약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지급지시의 수익자의 계정에 지급이체하지 않았다면 404(a)하에서 은행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의무가 만족되어질 때 결정된다. 그런데 404(a)하의 은행의 의무는 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할 때 까지 발생하지 않는다.⁴³⁾ 만약 은행이 수익자의 계정에 지급이체하지 않는다면 405(b)하에서 실제적으로 지급할 책임을 발생시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다음 수익자거래은행의 승낙은 그가 수신한 지급지시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계정에 지급지시와 관련하여 지급이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다.⁴⁴⁾ 은행의 이와 같은 행위는 209(B)(ii)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조항에서는 은행에서는 수익자에게 지급이체한 사실을 통지하거나 지급지시를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도 조건부적이다. 따라서 지급지시의 전송자로부터 지급이 수취될 때 까지 자금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209조에서는 수익자거래은행은 전송자의 지시금액이 수권된 계정에 인출가능한 지급잔고를 보유하고 있을 때 또는 은행이 전송자로부터 은행의 익일자금이체영업일의 개시시점에 지급을 완전히 수취할 때 지급지시를 승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⁵⁾ 이 조항은 수익자 거래은행에게 예탁된 자금이 다른 채무로부터 자유롭게 지급지시를 이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이 시점에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자금은 이체될 것이며 인출될 수 없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수익자거래은행의 승낙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210조에 따라 은행이 지급지시를 거절하기 위한 내부의결수립과정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다.⁴⁶⁾ 은행은 별

42) 이병렬·이천우, 전제논문, pp-157-159.

43) UCC 4A-209(b)(1).

44) 이병렬·이천우, “국제전자결제시스템에서 CHIPS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 제8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12, pp.76-77.

45) UCC 4A-209(b)(3).

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지급을 지시를 승낙할 의무도 승낙이전에 어떠한 행동을 취할 의무도 없다. 이와 같은 다음의 사건에서도 입증되었다.

IV.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1. 지급지시승낙의 재량권에 관한 시사점

최근 거래은행의 지급지시의 거절과 관련된 분쟁에서 법원은 거래은행에게 지급지시의 승낙 및 거절에 따른 법적인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United States v. BCCI Holding, SA. 사건⁴⁷⁾에서 금융당국이 부도난 기업의 자산동결과 자산에 대한 권리의 박탈에 따른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해당기업의 자금을 출금할 것을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거래은행은 지급지시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이에 법원은 거래은행의 지급지시 승낙과 거절에 관하여 거래은행이 합리적인 사고의 바탕 위에서 지급지시의 거절을 결정하였다면 거래은행의 권리행사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Banco de la Provincia de Buenos Aires v. Bat Bank Boston, N.A.* 사건⁴⁸⁾에서도 법원은 제4A편하에서 거래은행이 지급지시를 거절하는 것은 그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지급지시의 거절에 따른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은행의 지급지시의 승낙과 거절에 대한 재량권은 원지시인의 거래은행과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적절하게 이행한 지시라 할지라도 해당 지급지시를 거절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급지시의 거절은 원지시인을 포함한 전송자가 지급지시에 관련된 해당자금을 거래은행에게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거래은행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지급지시의 승낙과 거절에 따른 책임과 관련하여 거래은행이 지급지시의 전송 전후를 불문하고 그 지급지시를 승낙한다는 내용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급지시의 승낙을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의 규칙에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지급지시를 승낙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명시적 약정에 의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지급지시에 대하여 승낙을 태만히 하

46) 212조는 승낙되지 않은 지급지시와 관련된 수신은행의 의무와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수익자거래은행은 전송자로부터 지급지시를 수신하지만 매우 종종 중계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수신하기도 한다.

47) 683 NE2d 756 (NYCA, 1997)(“CITIC”); 961 F. Supp. 282(“Banque Indosucw”); 977 F. Supp. 449(“STO”); 977 F. Supp. 20(“Zaman” and “Bhandari”); 977 F. Supp. 443 (“MPS”); 977 F. Supp. 449 (“BNL”); 980 F. Supp. 21(“Ahmed”); 980 F. Supp. 2 (“Huber”); 980 F. Supp. 507 (“CGEIT”); 980 F. Supp. 515 (“Bank of Jamaica”); 980 F. Supp. 552 (“BNY” and “BOCI”).

48) 8165 (RJW), S.D.N.Y. (October 31, 1991).

였다면 거래은행은 승낙의 범위까지 또는 그 범위를 한도로 하여 약정위반에 따른 책임만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지급지시의 승낙에 근거한 거래은행의 채무는 승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에만 발생하고 또한 채무는 제4A편이 인정하고 있는 범위에 한정된다.⁴⁹⁾ 왜냐하면 거래은행은 자신이 승낙하지 않은 지급지시와 관련하여 원지시인 또는 수익자, 및 해당자금이체에 대한 기타 어떠한 당사자의 대리인도 아니기 때문이다.

2. 원지시인거래은행의 지급지시승낙에 관한 시사점

원지시인거래은행이 지급지시승낙후 지급지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거래은행은 전송자의 이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urocredit Bank v. Citibank, N.A., 사건⁵⁰⁾에서,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예탁된 자금을 이체하라는 전송자의 지급지시의 수신하기 이전에 지급지시를 먼저 이행하였다.⁵¹⁾ 이에 법정은 원지시인거래은행에게 지급지시가 수신된 때만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이행하라는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무권한 이체를 이행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상기의 사건에서처럼 원지시인거래은행이 지급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송자와 거래은행간에 체결한 명시적 약정에 일치하는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비용과 이자손실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⁵²⁾ 그러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은행은 인출가능신용잔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거절통지를 적절히 수신하지 않는 한,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거래은행들은 이자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만약 이 조항이 적용된다면 자금이체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초 하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이체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명시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객에게 전송된 새로운 자금이체 약정을 이행할 필요성에 대한 통지는 거절통지로서 기여하게 될 것이다.⁵³⁾

또한 *Pan American World Airlines v. Midatlantic Natl. Bank* 사건⁵⁴⁾에서 법원은 원지시인거래은행이

49) 제4A-212.

50) 1996 WL 556990 (S.D. N.Y. 1996)

51) 제4A-204.

52) 제4A-305(d).

53) 거절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 즉 거절통지에 따른 약정을 하였다면 반드시 거절통지를 통하여 거절하여야 할 것이다. 거절과 관련된 제4A편의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지급지시 거절통지의 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상업적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수신은행이 전송자의 계정으로부터 이체지급을 받았을 때까지 거절에 따른 통지를 적당한 시기에 하지 못하였다면 단지 단기이자(short-time)를 지급하여야 하는 책임만 부담할 뿐 승낙은 발생되지 않는다. 반면 표준법에서는 지급은행이외의 수신은행이 거절하지 않았거나 거절의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자동적으로 지급지시의 승낙은 발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지시를 승낙하지 않은 수신은행은 늦어도 이행기간 종료일의 다음 은행 영업 일까지 전송자에게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지시의 효력은 이행기간 종료 일에 이은 다음 은행 영업일 전에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승낙 또는 거절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둘째, 지급지시의 거절통지의 방법은 전송자에게 구두, 문서 또는 전자적 통신수단에 의하여 전달되어야 거절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 이에 따라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거절통지를 할 경우 특정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이 지시의 거절, 지시의 이행 및 지시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면 충분하다. 한편 표준법에서도 지급지시의 거절통지의 방법과 관련하여 제4A편과 동일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원지시인에게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계정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지급은행에게 자금을 이체 할 것을 지시 받은 후에 여러 달 동안 이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고객은 이자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지시인이 그의 거래은행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계정에 출금가능 잔고를 가지고 있고 거래은행이 그 잔고를 초과하지 않는 지시를 거절하거나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때에도 거래은행은 원지시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거래은행이 이러한 책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약정에 기초하여 부가적인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수익자거래은행의 지급지시승낙에 관한 시사점

수익자거래은행의 지급지시를 이행하라는 전송자의 지급지시를 승낙하였다면 그의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Aleo International Ltd. v. Citibank, NA*⁵⁵⁾에서 원고인 원지시인은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인 시티은행에게 독일에 있는 수익자에게 자금을 하기 위하여 독일의 수익자거래은행인 드레스더너 은행(Dresdner bank)에게 지급지시를 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티은행은 동일한 날 지급지시를 전송하였다. 다음날 원고는 뉴욕에 있는 시티은행에게 자금이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수익자거래은행은 이미 독일의 수익자의 계정으로 지급이체를 하였다. 시티은행은 지급지시를 취소하기를 원하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지급지시의 취소 요구를 거절한 시티은행의 태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정은 제4A-102조의 공식코멘트(official comment)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거래은행이 태만하다고 하는 주장은 211(2)에 의하여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수익자거래은행은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존재 및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지시를 승낙하여야 한다.⁵⁶⁾ 즉 지급지시가 수익자를 명의회 계정번호 둘 다를 지정하고 있을 경우, 명의회 계정번호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 수익자거래은행이 계정번호에 의하여 행동하는 한 수익자거래은행의 승낙은 유효하다.⁵⁷⁾

Southtrust Bank of Alabama, NA v. Turkiye, Ithalat Ve Ihracat Bankasi, A.S. et al., 사건⁵⁸⁾에서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2개의 미국 중계은행을 경유하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수익자거래은행 지급지시를 전송하였다. 그런데 원지시인거래은행이 두 번째 중계은행에 전송한 수익자거래은행의 계정번호가 잘못되었다.⁵⁹⁾ 즉 첫 번째 중계은행이 두 번째 중계은행에 원고의 지급지시를 이행

54) 1991 U.S. Dist. LEXIS 389 (D/N.J. 1991).

55) 24 UCC Rep. Serv. 2d (Challaghan) 164, 612 NYS 2d 540(Sup. Ct 1994).

56) 제4A-207(a).

57) Benjamin Geva, *op. cit.*, pp.28-31.

58) 116581/94(NY Sup. Ct.)(Jan. 19, 1995).

59) George A. Schneider, "Article 4A: Development at The Crossroad of Law and Foreign Bank Compliance(Part 1)", *Banking Law Journal*, Vol. 3, 2003, pp.327-329.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계정번호를 전송하였다. 따라서 수신한 잘못된 계정번호를 두 번째 중계은행은 그의 은행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되지 않은 당사자에게 지급이체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금이체는 종결되었다. 두 번째 중계은행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지정되지 않은 수익자가 되었으며 두 번째 중계은행은 지정되지 않은 수익자거래은행이 되었다. 결국 지정되지 않은 수익자는 지정되지 않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에게 부채를 지게 되어 수익자거래은행에게 자금을 인출하였다. 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인 원고는 자금이체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기 위하여 자금을 두 번 전송하였다. 첫 번째 전송한 자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두 번째 중계은행과 지정되지 않은 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⁶⁰⁾ 이에 법정은 두 번째 중계은행은 정상적인 수익자거래은행이 될 수 있고 은행은 오직 그가 수신한 계정번호에 기초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며 심지어 계정번호가 잘못이 있더라도 그 사실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자금을 인출할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New South Federal Sav. Bank v. Flatbush Federal Sav. and Loan Ass'n of Brooklyn* 사건⁶¹⁾에서 수익자거래은행은 동일한 계정번호로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하라는 지급지시를 여러 번 수신하였다. 수익자거래은행은 육필로 각 지급지시를 수신하였다.⁶²⁾ 육필로 지급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수신된 지급지시의 계정번호는 동일하게 입력하였지만 수익자의 명의를 각각 달리 입력하였다. 즉 첫 번째 지급지시에서는 수익자를 "ROBERT PLAN INC FBO FEMI INGOLD ULTIMATE NETWORK"로 지정하였고, 두번째 지급지시에서 수익자는 "ROBERT PLAN CORPORATION FEMI INGOLD ULTIMATE NETWORK"로, 그리고 세 번째 지급지시에서 수익자는 "ROBERT PLAN INC FC-FEMI INGOLD ULTIMATE NETWORK"로 지정하였다.⁶³⁾

그러나 법정은 각 지급지시에서 나타난 수익자로서 "FEMI INGOLD ULTIMATE NETWORK"가 계정번호가 동일한 Femi Ingold의 무역회사 명의이기 때문에 각 지급지시에서 지정한 수익자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수익자거래은행의 승낙은 207(b)(1)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수익자거래은행은 지급을 정확히 이행하기 위해서 원지시인인 그의 고객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주의할 의무는 없을 뿐 아니라 그의 고객이 사기성이 있는 고객이 아닌 원지시인이 지급을 지

60)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번째 중계은행은 수익자거래은행으로서 인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잘못된 계정번호로 지급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 둘째 첫 번째 중계은행은 두 번째 중계은행에 있는 수익자의 거래은행의 계정번호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중계은행은 두 번째 중계은행에게 지급지시를 두 번 반복하는 태만을 범하였다.

61) 50 U.C.C. Rep. Serv. 2d 341 (S.D. N.Y. 2003).

62) 이 사건에서 수익자거래은행은 오프라인 은행으로서 각 지급지시는 연방준비은행의 대리인과 은행의 직원과는 전화상으로 통신되었다. 연방준비은행에 은행직원이 지급지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때 계정번호와 명의를 일치하였다.

63) *Tzaras v. Evergreen Intern. Spot Trading, Inc.* WL 470611 (S.d. N.Y. 2003) 사건에서 계정번호 및 명의로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을 지시하였다. 좀더 구체적인 지급을 위하여 원지시인은 계정번호에 의하여 확인된 하위(sub)계정으로 지급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수익자의 거래은행에는 어떠한 하위계정도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수익자의 계정으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지시인은 수익자의 거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정은 수익자의 계정으로 수신된 지급지시는 비존재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수익자 및 계정으로 지급지시는 적절히 승낙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시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도 없다. *Eisenberg v. Wachovia Bank* 사건⁶⁴⁾에서 사기꾼은 "dba"인 대규모 금융기관의 명의로 은행계정을 개설하였다. 그는 어떠한 전자자금이체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사기성 있는 계정으로 또 다른 은행에 개설된 계정으로 자금이체를 지시하였다. 그 후 이 자금을 착복하였다. Eisenberg는 수익자거래은행으로 행동하는 사기성 있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왜냐하면 원지시인/희생자는 사기꾼이 지시하는 지시대로 자금을 이체하여 손실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법정은 자금이체의 고객이 아닌 원지시인에 대한 수익자거래은행의 주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수익자거래은행이 전송자인 원지시인이 진정성을 가진 은행의 고객인지 주의할 의무는 제4A편에서 수익자거래은행의 의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V. 결 론

미국이 제4A편을 제정한 목적은 저비용 및 고속력전송의 특징을 가진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함으로써 거래은행을 포함한 관련당사자들의 책임과 위험, 특히 간접손실(Consequential Damages)과 같은, 을 할당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하여 관련당사자들이 전자자금이체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제거시키고 분쟁을 조정하여 이 시스템의 제도적 정착을 기하기 위함이다. 제4A편을 기초함에 있어 주요한 고려사항은 확실성을 가진 위험의 예측 및 보장, 운영 및 보안절차의 확립이었다. 이로 인하여 자금이체서비스를 적절히 평가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들을 규율하기 위한 배타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자금이체에서 당사자들의 의무, 책임 및 권리들에 대한 제4A편의 적용은 독점적(배타적)이다. 따라서 제4A편 외부의 형평법(equity)과 법 원리에 의지하여 제4A편에서 제시한 의무 및 책임과 불일치한 의무와 책임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최근 판례들인 *Sheerbonnet, Ltd. v. American Express Bank, Ltd* 사건⁶⁵⁾과 *Pioneer Commercial Funding Corp. v. American Financial Mortgage Corp* 사건⁶⁶⁾에서도 드러나 제4A편의 독점적 적용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기업간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제4A편의 적용의 배타성은 전송자의 지급지시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정상적인 전자자금이체 메카니즘상에서 마지막 수신은행에 해당되는 수익자거래은행의 지급지시의 승낙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효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자금이체의 완료이자 채무자인 원지시인이 채권자인 수익자에게 안고 있는 근거채무가 변제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거래은행의 지급지시의 승낙은 관련당사자간의 가장 주요한 지급의무의 완성으로서 모든 책임과 권리는 여기서 발생된다고

64) 301 F.3d 220, 48 U.C.C. Rep. Serv. 2d 694 (4th Cir. 2002).

65) 905 F. Supp. 127, 28 U.C.C. Rep. Serv. 2d (CBC) 330 (S.D.N.Y. 1995).

66) 797 A.2d 269, 47 U.C.C. Rep. Serv. 2d (West) 326. (Pa. Super. Ct. 2002).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급지시의 승낙을 고찰한 본 고에서 전자자금이체당사자들의 분쟁을 감소시키고 정상적으로 자금이체를 완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원지시인의 거래은행과 수익자거래은행에게 수신된 지급지시를 승낙할 것인지의 여부 결정할 재량권을 관련은행에게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이에 부가하여 이 승낙과 거절을 결정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은행실무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은행들에게 다양하고도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를 이행할 특정의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승낙과 거절에 관한 거래은행에 결정에 구체적인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면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고객과 거래은행간의 책임과 의무의 분수령이 되는 구체적인 경계를 제공함으로써 훨씬 투명한 위험할당책이 될 것이다.

둘째 거래은행이 수신한 지급지시의 승낙을 거절할 경우 거절통지 또한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현행 제4A편에서는 거절통지여부를 약정에 일임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일은 거래은행은 지급지시를 이행한 후 지급지시의 이행에 관한 결과를 관련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은 은행명세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지급지시의 이행으로 무권한 이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객의 이의 제기시한 때문에 법정의 판결에 맡겨지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Rogato v. North Fork Bank*⁶⁷⁾사건에서 고객의 이의제기시한을 15일로 판결하였지만 이도 전자자금이체가 발생한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객의 이의제기시한의 연장과 탄력적 적용은 지급지시의 승낙과 거절에 관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은행의 면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에 대항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이처럼 거래은행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을 보완하면서 고객에게는 그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해줌으로서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은 새로운 결제시스템으로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병렬, “기업간 전자자금이체에서의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2.

_____, “신국제결제시스템으로서 전자자금이체에서의 고객의 보호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3호, 2004.9.

이병렬·이천우, “은행간 온라인 결제시스템에서 결제실패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20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3.

_____, “국제전자결제시스템에서 CHIPS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 제8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67) 2003 U.S. Dist. Lexis 4296 (S.D.N.Y. March 19, 2003).

2006.12,

유선기, “전자자금이동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7.

정경영, “자금이체제도의 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4.

_____,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3

Baxter Thomas C. and Freis James H., “Electronic Commerce and Transactions Article 4A and Electronic Payments”, *American Law Institute-American Bar Association Continuing Legal Education ALI-ABA Course of Study*, December 1998.

Crawford Bradley,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The influence of Article 4A on the Model Law”, Vol. 19, *Cansas Business Law Journal*, 1991.

Fry Patricia Brumfield, “Basic Concepts in article 4A : Scope and Definition,” *The Business Lawyer* Vol. 45, 1990.

Geva Benjamin, “Recent UCC Article 4A Jurisprudence: Critical Analysis”, *Uniform Commercial code Journal*, Vol. 36. No. 2, fall 2003.

_____, *The Law of Electronic Funds Transfers*, Matthew Bender & Co., Inc, 2003.

Kyles Dianna, “The Concept of Payment: Wire Transfer Order, The Common Law and article 4A”, *Dalhousie Journal of Legal Studies*, Vol.11, 2002.

Miller Fred H. and Davenport William B.,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the Uniform Commercial Code,” *The Business Lawyer* Vol. 45, 1990.

Sommer Joseph H, “A Law of Financial Account: Modern Payment and Securities Transfer Law”, *The Business Lawyer*, Vol. 48, Aug. 1998.

Patchel Kathleen, Meadow Robyn L and Bjerre. Carl S, “The Uniform Commercial Code survey: Introduction”, *The Business Lawyer*, August 1999.

Schneider George A., “Article 4A: Development at The Crossroad of Law and Foreign Bank Compliance(Part 1)”, *Banking Law Journal*, Vol. 3, 2003.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2006-2007)

유엔 국제지급이체에 관한 표준법

<http://www.secure.law.cornell/uniform.html>, 10 Feb., 2005.

<http://www.law.cornell.edu/ucc/4A/4A-102.html>, 15 May., 2004.

http://www.lawupenn.edu/library/ulc/UCC_2b/2b898.html, 14 Jan., 2006.